

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6월 9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5월 31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5월 31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6월 9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소통담당관 마정하)

가. 제안이유

- 시대적 흐름에 맞는 다양한 소식지 구현을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, 제정 후 장기간이 지난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」를 현행 규정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발행 목적 및 명칭 (안 제1조와 제2조)
- 발행 및 배부 등 (안 제3호)
- 실는 내용 (안 제4조)
-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(안 제5조부터 제10조)
- 구민기자 등 위·해촉 (안 제11조와 제12조)

- 소식지 제작 참여에 대한 원고료 등 (안 제13조)
- 광고의 게재 등 (안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통용해서 사용하는 용어와 법제상 사용하는 용어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없애고, 소식지와 객원 명예기자의 명칭 현행화 및 편집위원회 연임 횟수 명시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
-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사 유
소식지 명칭	[조례] 제2조(명칭) 금천구 소식지는 ‘눈부신금천소식’으로 한다.	[조례안] 제2조(명칭) 금천구 소식지는 ‘금천향기’로 한다.	2016년부터 사용한 명칭 현행화
발행 및 배부 등	[조례] 제3조(발행인) 제4조(발행일 등) 제13조(발행부수 및 배부 등)	[조례안] 제3조(발행 및 배부 등) ①②③항 보완, ④항 신설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 또한 구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. 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, 발행부수·배부처·배부수량·배부방법 등은 발행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. ④ 구청장은 홈페이지, 소셜미디어 및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.	발행 관련 규정 보완 및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내용 신설
실는 내용	[조례] 제6조(게재내용) 소식지 게재 내용은 구정, 교양,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.	[조례안] 제4조(실는내용)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는다. 1. 국정·시정·구정 및 구의정에 관한 내용 2. 교육, 문화,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내용 3.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내용 4. 문예작품, 구정의견 등 독자투고 5. 그 밖에 구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	내용의 구체화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사 유
		인정되는 내용	
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	[조례] 제7조(편집위원회 구성 등) 제8조(편집위원회의 기능) 제9조(간사 등) [시행규칙] 제2조(편집위원의 위촉) 제3조(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안건) 제5조(객원명예기자 및 편집위원 등 해촉)	[조례안] 제5조(편집위원회의 설치) 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제7조(편집위원의 위촉) 제8조(편집위원의 해촉) 제9조(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안건) 제10조(간사 등)	시행규칙의 규정을 조례로 상향하고 위원회 규정을 설치, 기능, 위촉, 운영 순으로 정비하고 연임 횟수(2회) 등 규정 보완
구민기자 명칭 등	객원명예기자 * (사전적의미) 어떤 일에 직접적인 책임이나 상관이 없이 참여하는 사람, 또는 어떤 단체에서 구성원이 아니면서 손님 대우를 받으며 일을 보아줌으로써 참여하는 사람	구민기자	소속감과 대표성이 떨어지는 명칭의 한계를 보완하고, 2012년 10월호부터 사용한 명칭 현행화
	[조례] 제10조(객원명예기자 등 위촉운영) 시행규칙 제4조(객원명예기자 등의 위촉) 제5조(객원명예기자 및 편집위원 등 해촉)	[조례안] 제11조(구민기자 등 위촉) 제12조(구민기자 등의 해촉)	시행규칙의 규정을 조례로 상향하고 명칭 현행화
원고료 등	[조례] 제12조(위원수당 등)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소식지에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등 실비를 보상하거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. 1. 객원명예기자로 위촉되어 기획 취재 또는 자유 형식의 글을 게재한 자 2. 독자투고자로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보유하여 칼럼 또는 작품을 게재한 자 또는 일회적인 내용을 게재하여 채택된 자 3. 그 밖에 소식지 제작과 관련한 퀴즈, 그림 찾기, 기타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	[조례안] 제13조(원고료 등) ①항 삭제, ②항 보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1. 구민기자로 위촉되어 기획취재 또는 자유 형식의 글을 제공한 사람 2. 자료 제공 또는 인터뷰 등으로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 3. 그 밖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정 관련 퀴즈, 설문조사 참여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사람	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와 중복되는 위원수당 삭제 및 규정 보완

○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